제30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의 회 사 무 국
위 원 회 제 안

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제안연월일	2026. 10. 14.
제 안 자	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

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의 안 번 호	

제안연월일 : 2026. 10. 14.
제 안 자 :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

1. 제안이유

본회의에서 제명안을 표결하여 부결된 경우 이후 낮은 단계의 징계를 의결함에 있어 관련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징계의 의결과 선포(안 제92조제3항)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해당사항 없음

나. 기 타: 해당사항 없음

다. 예산조치: 별도 조치 필요없음

구미시의회 규칙 제 호

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제명이 의결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본회의는 다른 징계의 종류를 의결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2조(징계의 의결과 선포) ①·②(생 략) <신 설>	제92조(징계의 의결과 선포) ①·②(현행과 같음) ③ 제명이 의결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본회의는 다른 징계의 종류를 의결할 수 있다.